

## 오보와 정정보도청구권

발 표 자: 이 상 회  
연세대 교수, 중재 위원

### 1. 서 론

오보란 문자 그대로 잘못된 보도를 뜻한다. 다시 말해 사건과 다른 보도, 실제와 다른 보도가 오보다. 그러나 오보의 개념도 나라에 따라 같지 않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의 언론은 국민이 알아야 할 일을 보도를 통해 가르쳐줄 책임과 임무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국민의 알 권리」(right to know)를 충족시켜줄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언론이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신속·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저널리즘의 기본 윤리이다.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일을 취재하여 보도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모여 이루어진 기구이고 보면 오보란 불가피하다. 더구나 신속한 보도를 저널리즘의 신조로 삼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언론은 오보의 위험성을 처음부터 잉태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오보를 범한다는 것은 권위 있는 언론, 책임 있는 언론의 수치임에 틀림없지만 어떤 언론도 오보를 범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는 보는 것이 옳다.

오보를 크게 분류하면 과실 오보와 무과실 오보가 있을 수 있고, 또 가해 오보와 비가해 오보로 구분할 수 있다. 과실 오보란 보도자나 보도기관이 주의를 하고 조심을 했으면 범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오보를 뜻하는 데 비해 무과실 오보는 주의를 하고 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생긴 오보를 뜻한다. 한 편 가해 오보와 비가해 오보는 오보로 인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오보를 구분하는 방법이다. 오보로 인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가해 오보이고, 수상자의 이름이 김길동인데 이길동으로 단순 오보되었다면 이는 비가해 오보가 된다. 그리고 오보에는 과실가해 오보와 과실 비가해 오보가 있을 수 있고 또 무과실 가해 오보와 무과실비가해 오보가 있을 수 있다. 과실 비가해 오보란 부주의로 오보가 났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는 경우다. 그리고 무과실 가해 오보는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보를 범한 것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 및 기관에 피해를 가하는 결과를 참는 경우이고, 무과실 비가해 오보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보를 범했지만 이로 인해 물질적·정신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위에서 논급한 오보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의도적 오보와 비 의도적 오보가 있을 수 있다. 의도적 오보란 보도자가 특정인이나 집단 및 기관에 이익 혹은 불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 고의로 범하는 오보를 뜻한다. 이에 비해 비 의도적 오보란 어느 일방에서 이익 혹은 불이익을 가져다 줄 고의적 의도 없이 범한 오보를 뜻한다. 그러나 비 의도적 오보가 결과적으로는 가해 오보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오보의 성격으로 보아 가장 악성적인 오보는 의도적 가해 오보이고, 가장 정상참작의 여지가 많은 오보가 비 의도적 무과실 가해 오보다.

언론은 고의든 비 고의든, 과실이든 비 과실이든 오보를 범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정확 · 신속 · 공정한 보도를 저널리즘의 기본강령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언론의 오류성 즉,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된다. 만약 언론이 언제나 정확 · 공정하게 보도한다고 한다면 언론이 지켜야 할 기본강령이나 윤리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늘날의 언론은 막강한 영향력을 작용할 수 있는 하나의 권력이다. 행정, 입법, 사법을 각각 1, 2, 3 부라 부르고, 언론을 제 4 부라 부를 만큼 압도적인 영향력을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이 거대한 조직을 이루고 막강한 영향력을 작용하는 기관으로 성장하자 자체의 이해가 생기게 되었고, 자체의 이해가 생기면서부터 언론의 이익이 반드시 국민의 이익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태되어 오늘날의 현실에 가장 알맞은 언론이론으로 발전한 것이 곧 언론의 사회책임이론이다. 막강한 영향력을 작용하는 권력체인 언론의 독주와 횡포를 감시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언론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

오보를 범했을 때 오보를 낸 언론은 그것이 어떤 성질의 것이든 이를 바로 잡아 정정해 줄 책임과 의무가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설사 그 오보가 비 의도적이고 무과실의 오보이고, 또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생기지 않았다 해도, 이를 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확 · 공정한 보도는 언론이 지켜야 할 기본강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보로 인해 피해자가 생기면 비록 그것이 비 의도적이고 무과실적인 보도로 인한 오보라도 그 피해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법적 권리를 갖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오보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향유하는 권리가 정정보도청구권이다.

우리나라 언론기본법이 명시하고 있는 정정보도청구권이 반론권에서 파생되어 나왔다고 보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반론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은 전혀 다르다. 반론권이란 어느 일방의 의견이나 주장에 의해 다른 일방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피해를 입은 쪽이 반론을 펼 기회를 갖는 권리다. 이론적으로 따져 반론권은 논설이나 논평과 같이 필자의 개인적 의견을 명백히 할 수 있는 기사에만 적용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와 같이 근대에 와서 반론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정보도청구권이 반론권에서 비롯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이론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사실보도의 경우 그것이 고의건 비고의건 정정보도의대상이 된다는 것은 법 이전의 저널리즘 윤리의 문제다. 따라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나 방송을 청구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사실 · 해설 · 논평 그리고 비평과 같이 개인적 평가와 가치주입이 허용 내지 권장되는 지면이나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논평이나 비평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부분을 잘못 묘사 혹은 기록한다면 이는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확히 말해 논평이나 비평 그 자체가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정당한 비판과 논평은 권장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시정과 발전은 비평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논평이나 비평 그 자체가 아니고 논평이나 비평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나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한 기록이나 묘사다. 가령 한 정치인의 발언 내용을 왜곡·변형하거나 완전히 날조한 후 이를 바탕으로 그 정치인의 정치적 역량을 평가하거나 비평했다고 한다면, 그 정치인은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정보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사가 사실과 다른 오보를 범하는 경우 그것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건 이를 정정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무엇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를 두어 정정을 위한 중재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는냐는 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가 비록 판결하는 기관이 아니고 중재라는 소극적 기능을 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언론의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발행인이나 방송국의 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음으로써 정정보도를 통해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 중 또 하나의 중재 외적 기능은 언론침해의 피해자가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를 신청하려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 절차상의 과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정보도를 위한 중재를 하는 기관이지 피해자를 위해 실질적인 보상을 주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가 발족하기 전까지 30여 년간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법원에 물은 예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정정보도를 게재케 함으로써 피해자가 신속하게 명예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중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오보로 인한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언론이 이를 정정하는 것은 저널리즘의 기본윤리라고 했다. 그러나 언제나 저널리즘의 기본 윤리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기관이 필요해진다. 더구나 언론사와 언론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그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중립적 입장에서 침해 여부를 가름해줄 기관이 필요하다.

외국의 신문은 정정보도를 하는데 인색하지 않다. 일단 오보임이 판명되면 이를 깨끗이 정정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정도로 믿고 있다. 신문이나 방송이 정정보도를 한다는 것은 떳떳한 일이지 결코 부끄럽게 여겨야 할 일이 아니다. 사람의 경우도 과오를 깨끗이 시인하고 고치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를 숨기려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것과 같다.

이미 수차에 걸쳐 명백히 밝힌 바와 같이 언론중재위원회는 결코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언론 본연의 기능을 침해하는 기관이 아니다. 오보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익을 침해 당한 사람을 정정보도를 통해 구제해 주자는 취지 하에 구성된 기관이다. 우리 언론을 선진외국의 엘리트 지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언론이 오보를 내었을 때 그 정정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주저 없이 신청하는 용기가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민주 시민이 될 수 있다. 정부도, 국회도, 법원도, 언론도 모두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해악을 미치는 기관은 어떤 형태로든 제재해야 한다. 언론이 진정한 국민의 입이 되고 또 국민의 권익을 옹위하는 기관이 되려면 스스로의 잘못으로 무고한 국민이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오보를 범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해 주는 떳떳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 서울대 문리대 영문학과,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박사)
- 저술: 「TV 인간론」, 「매스커뮤니케이션과 사회화」, 「매스커뮤니케이션총론」,  
「TV 방송과 대중문화」, 「권력과 언론」 외 다수
- 현재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송위원회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